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57 발의연월일: 2025. 4. 3.

발 의 자:윤준병・민병덕・박지원

신영대 • 이원택 • 이성윤

조계원 · 허 영 · 박희승

김교흥 • 안도걸 • 김한규

김태년 • 박민규 • 김우영

김태선 · 허종식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의사 자신이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 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 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 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5항, 제12조의2,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법률 제 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수의사는"을 "수의사(이하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 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을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로 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할 수 있다.

제17조의3제1항 전단 중 "개설자"를 "개설자 또는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이하 "동물병원 개설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개설자는"을 "개설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설자는"을 "개설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설자는"을 "개설자등은"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 중 "개설자는"을 "개설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설자는"을 "개설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설자는"을 "개설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설자는"을 "개설

자등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진단서 등) ① ~ ④ (생	제12조(진단서 등)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⑤
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	
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	
가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u>수의사는</u> 해당 농	<u>수</u> 의사(이하 "예외적
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	진료허용수의사"이라 한다)는-
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	
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	
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	
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
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①예외적진료허용수의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 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 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 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 다.

② ~ ⑤ (생 략)

제17조(개설)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 생장치의 설치·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u>사를</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개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진료허용수의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또는 수
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할
<u>수 있다.</u>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
생장치의 설치·운영) ①
개설자
또는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이
하 "동물병원 개설자등"이라
하다)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
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u>개설자는</u> 동물 진	② <u>개설자등은</u>
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2
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동물병원 <u>개</u>	<u>개</u>
<u>설자는</u>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설자등은
지체 없이 조치할 것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동물병원 <u>개설자는</u> 동물 진	③ <u>개설자등은</u>
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5제1항에 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하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	
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	
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	
리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운영) ① 동물을	る
진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장비	
(이하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	
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	
려는 동물병원 <u>개설자는</u>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비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u>개설자는</u> 동물 진	2
단용 특수의료장비를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인	
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③ 동물병원 <u>개설자는</u> 동물 진	3
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병원 <u>개설자는</u> 제3항에	4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	 I
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I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I
아니 된다.	

장비의	설치 • 운영) ①
	개설자등은
	<u>게 크게 6 단</u>
2	<u>개설자등은</u>
(3)	<u>개설자등은</u>
4	<u>개설자등은</u>